



주요국의 리스크 중심 퇴직연금감독동향과 시사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최근 OECD 주요국가들은 저성장·저금리에 따른 연금자산가치 하락, 금융시장의 불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 중심 퇴직연금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있음. 퇴직연금 운용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리스크기준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거나 리스크 평가체계 시스템 구축, 상시보고체계 도입 등 리스크 중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해외의 리스크 중심 감독동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를 위해 리스크관리 모범규정을 마련하고 연금제도 운영 위법사항 발견 시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토록하는 상시보고체계 도입과 연금재정의 건전성 정도를 평가하는 리스크 평가체계 구축이 전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최근 OECD 주요 국가들은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근로자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 중심 연금감독(Risk Based Supervisors)으로 전환함

- 호주 등은 저성장·저금리 현상으로 인한 연금자산가치 하락과 금융시장의 불안전성 심화 등으로 리스크 중심 감독을 추진함
 - 리스크 중심 감독은 연금 운용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통제하여 안정적 연금재정이 확보되도록 하는 제반 감독을 의미함
- 국제연금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Pension Supervisor : IOPS)는 운용관련 리스크 중심으로 감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함¹⁾

■ 리스크 중심 감독은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리스크기준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며 리스크평가 및 보고체계를 도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²⁾

-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은 리스크 중심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동향 중심으로 살펴보고

1) IOPS의 퇴직연금감독원칙(Principles of Private Pension Supervision 2014)에 의하면 연금감독기관은 리스크 중심 감독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제시함. 리스크 중심 감독의 세부내용은 원칙 5.1~5.9 참조
2) 각국마다 리스크감독 차이가 다소 존재하지만 대체로 리스크 중심 감독은 4가지 형태로 이루어짐

시사점을 제시함

■ (리스크관리 모범기준) 호주 등은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절차 및 계획이 포함된 리스크관리 모범기준을 제도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호주, 영국은 법령에서 규정한 리스크관리 모범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퇴직연금을 운용(예: 연기금 운용)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 수탁기관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모범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함
- 멕시코는 리스크관리 모범기준을 법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이에 기초해 수탁기관이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는지 상시 감독함
 - 법적으로 운영 및 재무리스크관리를 의무화하고 리스크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함

■ (리스크기준 건전성규제) 연기금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리스크기준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이 이루어짐

- 부실 운용으로 인해 안정적인 연금재원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최소적립비율(자산/부채)을 1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함
 - 영국은 104% 이상, 네덜란드는 105% 이상으로 최소적립비율을 설정함³⁾
- 또한 최소적립비율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하도록 건전성기준을 대폭 강화함
 - 이자율, 신용, 환율, 장수리스크이외에 주식시장 붕괴와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하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추가자본(Solvency Buffer)을 산출하도록 규정함
 - 네덜란드는 지급능력 버퍼 25%를 고려해 적립비율이 13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함

■ (리스크 평가시스템 구축) 연금제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리스크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호주는 금융기관의 파산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 평가체계인 PAIRS(Probability and Impact Rating System)시스템을 운용함
 - PAIRS 시스템에서는 금융기관의 파산확률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 정도를 평가함
- 호주의 리스크감독시스템 SOARS(Supervisory Oversight and Response System)에서는

3) 영국 등 유럽은 적립금비율(자산/부채)중심의 건전성 규제, 주식투자 등 운용리스크를 고려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함

PAIRS에서 산출된 리스크정도(리스크등급)와 영향을 고려하여 감독수준을 결정함

- 감독수준은 정상(임점검사시행), 검사(검사강화), 강제개선(개선방안요구), 구조조정(영업활동 제한 및 이사교체) 등 4가지로 구분함

■ (상시 보고체계 도입) 연금재정의 건전성 문제나 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생 시 감독당국에 신고· 보고하는 의무를 수탁자에게 부여함

- 영국은 사용자, 연금관리인 등 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신고의무(whistle blowing)를 부과함
 - 감독규정에서는 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신호등 체계(traffic light system)를 운용하도록 규정함
- 덴마크는 신호등 체계(traffic light system)를 운용하고 이에 기초하여 연기금자산의 건전성 정도를 감독당국에 보고함⁴⁾
 - 녹색등은 적절한 건전성 상태, 황색등은 건전성문제에 직면한 리스크가 있으며 적색등은 심각하고 즉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함

■ 현재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리스크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리스크 중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동향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⁵⁾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를 고려한 퇴직연금 운용리스크관리· 감독규정이 부재함
 - 또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수탁자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운용관련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하는지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기준도 없는 상황임
- 국가간 퇴직연금 지배구조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로 전환하는 사례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따라서 연금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통한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됨

- 퇴직연금 운용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기준(모범기준) 설정과 리스크

4) 스웨덴은 2006년 1월부터 연기금에 대한 새로운 감독방식인 신호등 모델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5) 계약형보다 기금형에서 리스크 중심 감독이 보다 요구되므로 기금형제도 도입 이전에 리스크 중심 감독 문제 검토가 절실함

감독계획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퇴직연금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리스크관리 기준(리스크관리 개요, 리스크관리 측정, 리스크관리 감시)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감독당국에게 보고토록 하는 신호등 체계의 도입 검토가 요구됨
- 장기적으로는 연금재정의 건전성 정도를 평가하고 감독에 반영할 수 있는 리스크 평가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kiri**